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13
----------	-------

발의연월일 : 2026. 6. 8.

발 의 자 : 이종욱 · 안철수 · 박수민
김상훈 · 박충권 · 윤한홍
나경원 · 이종배 · 송언석
배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경지로 활용되던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주택단지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이 주변에서 생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구역 내에 있는 공판장, 공동구판장은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통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시대적 변화와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여, 본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방치하기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생략)</p> <p><u><신 설></u></p>	<p>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u>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u></p>